

## 토지 출입증

(앞쪽)

<b>토지 출입증</b>	
소속: 직급: 성명:	사진 (2cm×3cm)
위 사람은 「물환경보전법」 제10조제5항에 따라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	
기관장명의	직인

92mm×85mm[백상지(150g/㎡)]

(뒤쪽)

출입 목적	
출입 대상 지역· 시설·사업장 등	
유효기간	년 월 일부터
	년 월 일까지
비고	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